##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76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송기헌·강훈식·김태년

박 정•백혜련•어기구

이성윤 · 조승래 · 주철현

허 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추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율은 오는 2025년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우리나라 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에서는 노인의 규칙적인 운동을 촉진하고자 수중운동과 같은 노인에 특화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친화적인 운동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많지 않고, 파크볼과 같이 혹서·혹한기에는 하기 힘든 운동이 노인 운동으로 보급되어 있어 노인이 꾸준히 체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상 황임.

이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에 '노인특화 체육시설'을 추가로 규

정하여 노인의 후생 증진 및 초고령사회에서의 의료재정 안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인특화 체육시설: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을 갖추어 노인에 특화된 체육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6條(老人餘暇福祉施設) ① 老	第36條(老人餘暇福祉施設)①		
人餘暇福祉施設은 다음 각 호			
의 施設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노인특화 체육시설: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		
	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 맞		
	춤형 체육시설을 갖추어 노인		
	에 특화된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